보도시점 (전매체) 10. 25.(수) 09:00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대학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20명,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재출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이며,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되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 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문창식 (044-204-77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목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근거 등을 규정한 개정 「상생협력법」 '23.3.28.공포, '23.9.29.시행

□ **(기능)** ①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구분	위원 자격 요건
위 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1.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	▪ 중기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 **(조정부)**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구성·운영 가능

* 위원장이 조정부의 장과 위원을 지명하고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 필요